

의안번호	2211915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5. 8. 27.
추계번호	25F4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차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32~2037년까지 총 6년간 총 1,376.0억 원(연평균 229.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7년까지 발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4년까지 발생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3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32~2037년

(단위: 억 원)

		'32	'33	34'	'35	'36	'37	누적	연평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연장 (안 제6조)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¹⁾ 창업	110.3	220.6	173.3	126.0	126.0	63.0	819.2	136.5
	└ 수도권 밖	63.0	126.0	126.0	126.0	126.0	63.0	630.0	105.0
	└ 수도권	47.3	94.6	47.3	—	—	—	189.2	63.6
	생계형 창업	278.4	278.4	—	—	—	—	556.8	278.4
	합계	388.7	499.0	173.3	126.0	126.0	63.0	1,376.0	229.3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 이행함을 가정하여 40세 이하인 사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지역별 차등하여 연장 적용(안 제6조 제1항	○ (제1항) 2027.12.31. 이전에 일정한 업종으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지역별 차등하여 연장 적용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및 제6항)	○ (제6항) 2027.12.31. 이전에 창업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기간 1년 연장 -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부칙에 따라 2026.1.1.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중소 기업에 적용하므로, 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에 적용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등	창업보육 센터사업
	(현행)	-		5년, 25%	5년, 50%	5년, 50%
	청년	5년, 50%		5년, 75%	5년, 100%	
	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
	→(개정안)	-		5년, 25%	5년, 50%	5년, 50%
	청년	5년, 50%		7년, 75%	10년, 100%	-
	생계형	6년, 50%		6년, 75%	6년, 100%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행 감면기간 이후에 발생
- 2026.1.1.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5년 연장하여 적용하므로 세수효과는 2032~2037년까지 발생
 - 2026.1.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하여 적용하므로 세수효과는 2032~2034년까지 발생
 - 2026.1.1. 이후 창업한 생계형 중소기업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 적용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1년 연장하므로, 세수효과는 2032~2033년까지 발생

□ 최근 5년('20~'24)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연평균 감면액이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따라 향후 일정하게 발생하고, 감면대상별 연평균 감면액이 균등하다고 가정하여 배분

-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른 최근 5년('20~'24)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배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해당 여부에 따른 감면율 적용 전후 감면대상별 연 단위 감면액 산출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5.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구분하므로, 연평균 감면액을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따라 1차 배분액을 산출
 - 2026.1.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되므로, 1차 배분액을 조정된 감면율에 따라 2차 배분액을 산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된 감면대상에 따라 연 단위 감면액을 배분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연 단위 감면액을 추정하여 배분
- 일반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연 단위 감면액을 추정하여 배분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연 단위 감면액을 추정하여 배분

[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연 단위 감면액 배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2022년 창업						
2023년 창업						
2024년 창업						
2025년 창업						
2026년 창업						
2027년 창업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차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개정연혁) 1986.12.26.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규정으로 1998.12.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대상의 변경 및 추가 또는 세액감면율과 감면기간 조정, 적용기한 연장 등 내용으로 개정
 - 1986.12.26. 신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 1998.12.31. 전면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전환
 - 2010.1.1. 일부개정: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추가 신설
 - 2016.12.20. 일부개정: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조정하는 단서 신설
 - 2017.12.19. 일부개정: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자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감면 추가 및 2018.12.31. 이전에 창업한 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상향조정
 - 2018.5.29. 일부개정: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상향조정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별 감면을 구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적용, 법인세 100% 감면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21.12.28. 일부개정: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2024.12.31. 일부개정: 2025.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2026.1.1.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에 따른 세액감면 기간과 감면율 적용, 감면세액 합계액에 대한 연간 5억 원 한도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기한 만료
 - (현행규정) 2025.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과 2026.1.1.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청년·생계형 등 대상과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고, 감면기간은 5년 적용
 - (개정안) 2026.1.1. 이후 청년이 중소기업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 7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의

세액감면 기간을 적용하고,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여 6년간 적용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등	
(현행)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개정안)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100%
	↳청년	5년, 50%	7년, 75%	10년, 100%	
	↳생계형	6년, 50%	6년, 75%	6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감면실적) 국세청 제출자료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2020년 3,440.8억 원, 2024년 8,471.8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청년과 그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 포함된 감면세액

[표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¹⁾	창업중소기업	1,404.7	2,166.7	3,395.2	4,840.7	5,702.4
	창업벤처기업	93.9	123.2	123.6	134.4	138.1
	소계	1,498.6	2,289.9	3,518.8	4,975.1	5,840.5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1,066.9	1,469.2	1,671.8	1,982.9	1,967.9
	창업벤처기업	873.8	1,102.8	889.2	805.5	663.0
	에너지신기술기업	1.5	1.7	0.4	0.1	0.4
	소계	1,942.2	2,573.7	2,561.4	2,788.5	2,631.3
합계		3,440.8	4,863.6	6,080.2	7,763.6	8,471.8

주: 1)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액이 미미하여 제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및 국세청 제출자료

(2) 추계방법

□ 최근 5년('20~'24)간 창업중소기업 대한 감면세액의 연평균 감면액을 산출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따라 배분하고, 감면대상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 조정을 반영한 연 단위 감면액 산출

- 최근 5년('20~'24)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청년과 그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생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평균 감면액을 산출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따라 구분
 - 최근 5년('20~'24)간 일반 및 청년,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된 것이나, 국세통계연보는 17개 시도별 자료로 제공되므로, 최저한세 대상 여부와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그 외에는 수도권 밖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감면액을 산출
 -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감면세액을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내 감면세액은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최저한세 대상인 수도권 밖 감면세액은 일반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평균 감면액을 대상별 균등하게 배분하고 2025 과세연도까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

[표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개년 평균 감면세액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따른 배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5개년 합계
최저한세 제외	수도권	259	665	1,098	1,465	1,698	5,185
	수도권 밖	370	637	1,164	1,791	2,339	6,301
	소계	629	1,302	2,262	3,256	4,037	11,486
최저한세 대상	수도권	827	1,184	1,451	1,959	2,005	7,426
	수도권 밖	1,017	1,150	1,353	1,606	1,629	6,755
	소계	1,844	2,334	2,804	3,565	3,634	14,181
합계		2,473	3,636	5,066	6,821	7,671	25,667
		연평균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대상		배분액
최저한세 제외	수도권	1,037.0	5년	50%	생계형/청년/보육		345.7
	수도권 밖	1,260.2	5년	100%	생계형/청년		630.1
최저한세 대상	수도권	1,485.2	5년	50%	생계형/청년/보육		495.1
	수도권 밖	1,351.0	5년	50%	일반/보육		675.5
합계		5,133.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평균 감면액을 대상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이후 2025.12.31.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별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1차 배분한 이후, 2026.1.1.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해당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2차 배분

- 5개년 연평균 감면액(5,133.4억 원)을 감면대상과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감면율에 배분하면 총 5,133.6억 원으로 단수차이 0.2억 원을 제외하면 동일
- 2026.1.1.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축소하여 적용하므로, 이를 반영하면 2차 배분액은 총 4,807.4억 원으로 다소 감소함

[표 5] 지역별 감면율 차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

(단위: 억 원)

	202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 조정 전			2026.1.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 조정 후		
	1차 구분	감면율	1차 배분액	2차 구분	감면율	2차 배분액
생계형 창업	과밀억제권역 밖	100%	315.1	수도권 밖	100%	315.1
	과밀억제권역 밖	100%	315.0	수도권 안	75%	236.3
	과밀억제권역 안	50%	840.8		50%	840.8
	소계		1,470.9			1,392.2
청년 창업	과밀억제권역 밖	100%	315.1	수도권 밖	100%	315.1
	과밀억제권역 밖	100%	315.0	수도권 안	75%	236.3
	과밀억제권역 안	50%	840.8		50%	840.8
	소계		1,470.9			1,392.2
일반 창업	과밀억제권역 밖	50%	337.8	수도권 밖	50%	337.8
	과밀억제권역 밖	50%	337.7	수도권 안	25%	168.9
	과밀억제권역 안	0%				
	소계		675.5			506.7
창업 보육 센터	과밀억제권역 밖	50%	675.5			675.5
	과밀억제권역 안	50%	840.8			840.8
	소계		1,516.3			1,516.3
합계			5,133.6			4,807.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 적용되기 전후 감면 대상별 연 단위 감면액을 산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감면액을 산출
 - 2025.12.31.까지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감면대상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1차 배분액을 5로 나누어 환산
 - 2026.1.1.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감면대상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2차 배분액을 5로 나누어 환산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감면액을 추정하여 감면기간 1년 연장의 세수효과 추계
 - 202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 적용
 - 2026.1.1.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에서 6년으로 적용

[표 6]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3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2022년 창업							
2023년 창업							
2024년 창업							
2025년 창업							
2026년 창업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2027년 창업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합계	278.4	556.8	556.8	556.8	556.8	588.8	278.4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감면액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 202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 적용
 - 2026.1.1.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100%와 감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75%와 감면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 적용

[표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7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47.3	47.3	47.3	47.3	47.3	47.3	47.3				
2027년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47.3	47.3	47.3	47.3	47.3	47.3	47.3			
합계	1103	2206	2206	2206	2206	2206	2206	1733	1260	1260	63.0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표 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2022년 창업						
2023년 창업						
2024년 창업						
2025년 창업						
2026년 창업	168.2	168.2	168.2	168.2	168.2	
2027년 창업		168.2	168.2	168.2	168.2	168.2
합계	168.2	336.4	336.4	336.4	336.4	200.2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 일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감면액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 202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 적용
 - 2026.1.1.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25%와 감면기간 5년 적용

[표 9]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2022년 창업						
2023년 창업						
2024년 창업						
2025년 창업						
2026년 창업	67.6	67.6	67.6	67.6	67.6	
	33.8	33.8	33.8	33.8	33.8	
2027년 창업		67.6	67.6	67.6	67.6	67.6
		33.8	33.8	33.8	33.8	33.8
합계	101.4	202.8	202.8	202.8	202.8	101.4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감면율 50%와 감면기간 5년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표 1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2022년 창업						
2023년 창업						
2024년 창업						
2025년 창업						
2026년 창업	303.3	303.3	303.3	303.3	303.3	
2027년 창업		303.3	303.3	303.3	303.3	303.3
합계	303.3	606.6	606.6	606.6	606.6	335.3

주: 는 기존 감면율,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한 감면율 조정

□ 개정안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3년까지 발생
-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7년까지 발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2~2034년까지 발생

[표 11] 청년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32~2037년

(단위: 억 원)

			'32	'33	'34	'35	'36	'37
생계형 창업			278.4	278.4				
청년 창업	과밀억제 권역 밖	수도권 밖	63.0	126.0	126.0	126.0	126.0	63.0
		수도권	47.3	94.6	47.3			
	소계		110.3	220.6	173.3	126.0	126.0	63.0
합계			388.7	499.0	173.3	126.0	126.0	63.0

(3) 추계결과

-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차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32~2037년 까지 총 6년간 총 1,376.0억 원(연평균 229.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32~2037년

(단위: 억 원)

		'32	'33	34'	'35	'36	'37	누적	연평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 연장 (안 제6조)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¹⁾ 창업	110.3	220.6	173.3	126.0	126.0	63.0	819.2	136.5
	└ 수도권 밖	63.0	126.0	126.0	126.0	126.0	63.0	630.0	105.0
	└ 수도권	47.3	94.6	47.3	—	—	—	189.2	63.6
	생계형 창업	278.4	278.4	—	—	—	—	556.8	278.4
	합계	388.7	499.0	173.3	126.0	126.0	63.0	1,376.0	229.3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 이행함을 가정하여 40세 이하인 사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